

의 안 번 호	제381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경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8월 28일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경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8일

발의자 : 박경숙, 김꽃임, 김국기, 이양섭,
이의영, 이종갑, 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에 이바지하고,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(안 제12조)
※ 2023. 12. 31. ⇨ 2028. 12. 31.
-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(안 제1조 ~ 안 제5조, 안 제7조 ~ 안 제8조, 안 제10조 ~ 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3. 8.
- 협의 :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농·수산물”을 “농수산물”로, “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”을 “특별회계의 설치 및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, “농·어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”를 “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1년중”을 “1년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1년중 60일 이상어업”을 “1년 중 60일 이상 어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“농수산물”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”을 “(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”를 “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5조 소정의 사업”을 “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 기금특별회계운용”을 “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”을 “도지사는”으로, “도지사”를 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”를 “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어촌소득개발”을 “도지사는 농어촌소득개발”로, “도지사는 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농·어업인”을 “농어업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농·수산물”을 “농수산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농·어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5조 소정의”를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농·어업인, 차세대농업인, 귀농인”을 “농어업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농·어업인”을 “농어업인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농·수산물”을 “농수산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3년거치 5년 균분상환”을 “3년 거치 5년 균분 배분 상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1퍼센트”를 “연 1퍼센트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상환”을 “사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”로, “회수하여 충척북도”를 “회수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조의 각호중”을 “제5조 각 호에”로, “지출 한다”를 “지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리·운용”을 “관리·운용”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 전입금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준속기한) 기금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감독)”을 “(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도 감독”을 “지도·감독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”를 “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”로, “일반회계 의”를 “일반회계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·수산물</u>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농어업인”이란 <u>충청북도</u> 내에 정착하여 <u>농·어업</u>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가. <u>1천제곱미터</u> 이상의 농지(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다. <u>1년중</u>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</p> <p>라·마. (생 략)</p> <p>바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농수산물</u>----- ----- ----- <u>특별회계의 설치 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농어업</u>----- -----.</p> <p>가. <u>1천 제곱미터</u> 이상의 농지(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 제9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1년 중</u> ----- -----</p> <p>라·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<u>1년중 60일 이상어업</u> 에 종사하는 자</p>	<p>----- ---- <u>1년 중 60일 이상 어업</u> -----</p>
<p>3.·4. (생략)</p>	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
<p>5. 삭제</p>	
<p>6. <u>“차세대농업인”이란 농업계고 등학교, 농업계 2년제대학, 대학 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 년 이내인 자 또는 만 32세 이하 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 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7. <u>“귀농인”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8. <u>“농수산물”이란 법 제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8. <u>“농수산물”이란 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 한다.</u></p>
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 충 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<u>운영심의 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</u> 를 둔다.</p>	<p>제3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심의 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</u>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</u> 3. <u>기타 기금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사항</u> <p>제4조(운용계획) ① <u>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</u>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도지사가</u> 수립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</u> 다음 <u>각호의 내용</u>이 포함 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당해연도 사업비 지원계획</u> 3. (생략) 4. <u>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 <p>제5조(사업지원) <u>농어촌소득개발을</u> 위하여 <u>도지사는</u>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농·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</u> 2. (생략) 	<p>③ ----- --- <u>각 호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</u>----- 3. <u>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</u>----- ----- <p>제4조(운용계획) ① <u>도지사는</u> ----- ----- ----- <u>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각 호의 내용</u>이 포함 되어야 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 연도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p>제5조(사업지원) <u>도지사는</u> <u>농어촌소득개발</u>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농어업인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3. 농어촌소득 증대 및 <u>농·수산물</u>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	3. ----- <u>농수산물</u>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<u>농·어업</u>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	5. <u>농어업</u> -----
6. <u>기타</u>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6. <u>그 밖에</u> -----
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<u>제5조</u> 소정의 사업비는 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	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<u>제5조에</u> 따른 -----
② 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② ----- <u>각호</u> -----.
1.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<u>농·어업인</u> , 차세대농업인, <u>귀농인</u> 은 1억원 이내로 하며,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.	1.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
2. 운영자금은 <u>농·어업인</u> ,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<u>농·수산물</u> 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10억원 이내로 한다.	2.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 <u>농수산물</u> -----
③ <u>제1항</u> 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③ <u>제1항에</u> 따른 -----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<u>3년거치 5년균분상환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용자금의 이자는 <u>연1퍼센트</u>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<u>의한</u> 이자를 가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 ----- <u>3년 거치 5년균분 배분 상환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연 1퍼센트</u>-----</p> <p>----- 따라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용자금의 회수) ① 시장·군수는 용자금을 받은 자가 용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<u>상환</u>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·군수</u>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<u>회수하여 충청북도 기금특별회계에 반납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용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10조(용자금의 회수) ① -----</p> <p>----- <u>사실</u>-----.</p> <p>② <u>시장·군수</u>-----</p> <p>----- <u>회수하여</u> 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11조(세입·세출) ① 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<u>각호</u>의 수입금으로 한다.</p> <p>1. <u>일반회계 전입금(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 이</u></p>	<p>제11조(세입·세출) ① -----</p> <p>----- <u>각 호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일반회계 전입금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상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잡수입금</p> <p>② 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<u>제5조의 각호중</u> 해당되는 사업비와 기금특별회계 운용경비로 <u>지출</u> 한다.</p> <p>③ 기금특별회계 <u>관리·운용</u>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u>제12조(존속기한)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(감독) 도지사</u>는 기금특별회계의 용자를 받은 시·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<u>지도 감독</u>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4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</u>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<u>일반회계</u>의 예를 준용한다.</p>	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---</p> <p>② ----- <u>제5조 각 호에</u> ----- ----- <u>지출한다.</u></p> <p>③ ----- <u>관리·운용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<u>제12조(존속기한)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(지도·감독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도·감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4조(준용규정)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</u> ----- ----- <u>일반회계의</u>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어업인의 생산·가공·유통 분야에 생산기반확충 및 시설 자금, 운영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, 농업 경쟁력 제고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
-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등

3. 관련조문

- 제5조(사업지원)
- 제7조(사업비 지원)
- 제11조(세입·세출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농어업인 용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
-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5년간 연 115억원
- 재원조달방안 : 전입금, 용자금 이자, 공공예금이자, 용자금원금, 순세계잉여금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